

95  
2  
기  
인  
권  
학  
원  
출  
판  
인  
권  
위  
의  
하  
아  
권  
양  
전  
판  
인

인·권·활·동·기·를·위·한

# 제2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

1995. 9-1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G1.46

G1.46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2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

1995. 9-1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 차/래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

1. 세계의 사형제도/ 9.16	고은태	3
2. 장애인의 고용문제와 현황/ 9.23	김정렬	52
3. 성폭력, 아내구타의 실태와 대책/ 9.30	김혜선	59
4. '95 북경세계여성대회 보고와 전망/ 10.7	이상덕	66
5. 통일과 관련한 비클리대 학생운동/ 10.21	조방기	71
6. 한국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총론)/ 10.28	하종강	77
7. 한국 노동문제의 유형과 내용(각론)/ 11.4	하종강	81
8. 동성애자의 인권/ 11.11	시동진	102
9. 부랑인의 인권/ 11.18	김수경	126
10. 보안관찰법의 내용과 본질/ 12.2	이창호	148
11. 여성관련 국제조약/ 12.9	신혜수	163
12.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12.16	조용환	170
13.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12.23	오재식	177

# 세 계 의 사 형 제 도 ;

## 차례

1. 국가의 살인행위-사형제도	4
2.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	7
3.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입장 - “스톡홀름선언”	13
4. 사형폐지운동의 의문점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답변	15
5. 전시의 사형제도 : 그 폐지에 관한 논의	20
6. 세계 사형제도 폐지 현황(1994. 12) 및 통계	25
7. 인권보고서 중 사형폐지 부분 발췌	30
8. 한국정부에 보내는 앰네스티 공개서한	32
9. 사형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 명단	35
10. 미국정부에 보내는 앰네스티 공개서한(1994.1)	37
11. 1993년동안 미국에서 사형집행된 수인 명단	40
12. 1993년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	41
13. 앰네스티가 전하는 사형폐지 소식	42

그리스, 덴마크, 모로코, 미국(버지니아주), 이란,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남아공화국, 미국(뉴욕, 텍사스, 미시시피주), 중국, 라투아니아, 터키/ 일본, 이탈리아, 중국, 남아프리카, 케냐/ 투르크공화국, 바이람겔디 차리예프, 유리 아이리예프, 한국

### 참고문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도서출판 까치, 1989)

## 국가의 살인행위 - 사형제도

고은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부지부장

생명권(The Rights of Life)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제인권관련 규준들은 생명권을 확인하고 있으며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 세계의 국가들이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6조 1항은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 의정서는 이러한 생명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계의 국가들에게 국가의 의무로써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사형은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찬반논쟁의 대상이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고대로마의 십이표법 등으로부터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형제도는, 근대형법학이 성립된 이후에도 루소의 사회계약설, 칸트와 헤겔의 옹보형론, 밀의 공리주의 등 사형존치에 대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진행되어 왔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옹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형존치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들,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국제인권기준의 제정 그리고 사형폐지국에서의 경험은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764년 백카리아(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사형폐지론은 시작되었으며, 그후 길핀, 블랙, 롬브로소, 리스트 등으로 이어지며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챔블리스(Chambliss)는 1951년부터 1966년 사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집행된 수인의 숫자와 살인율을 비교하여 사형집행률이 현저히 감소해도 살인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바버(Barber)와 윌슨(Wilson)이 퀸스랜드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형집행률과 살인율간의 관계는 정비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셀린(Sellin)교수는 1961년에서 1967년까지 미국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가진 주들의 살인율 비교과정에서 사형제도가 살인율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프랑스 판사인 안셀(M.Marc Ancel)씨는 1960년 유엔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24개국과 오스트리아의 1개주 그리고 미국의 6개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1988년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범죄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로저 후드박사(Roger Hood)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9개국에서 사형이 폐지되었다고 한다. 1994년 1월 현재 세계 90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53개국,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16개국,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 21개국 - 그 폐지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1994년 1월 현재 103개국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으며 1993년 동안 세계에서 61개국의 3,283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고,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먼저 국가에게 사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떠한 법익과의 비교형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형은 잔인하고 모욕적이며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점이다.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 전기의자, 극독주사, 총살, 돌로 쳐죽이기, 가스실 등이다. 이러한 집행방법은 그 자체로도 비인간적이며 잔인하다. 그리고 사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강요하고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게 한다.

셋째, 사형제도는 범죄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형벌의 기능인 옹보, 범죄억제 그리고 교도의 측면에서 한 수인을 사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미국,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에서 조사된 연구내용들은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보다 효과적인 범죄억제기능을 가진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째, 사형은 사법적 오류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보상으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의 사형존치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사형제도가 종종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독재국가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정권하에서 김대중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던 사실은 좋은 예이다.

여섯째, 사형제도가 그 적용과정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종류의 살인을 행한 어떤 수인에게는 무기형이 선고되고 어떤 수인은 사형집행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빈곤계층, 소수인종, 소외집단에게 편중되어 적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국가인 중국에서는 단지 소 일곱마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수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며 미국등 6개국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한국은 사형존치국이며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이다. 한국은 오랜 사형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법의식과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00여 개가 된다.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며 지금도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1987년 이른바 가정파괴범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서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소위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가 비록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였다는 도덕적인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재고하여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은 고유하고도 존엄한 것이며 어떠한 이유나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지니고 있는 범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또다른 살인행위일 뿐이다.



###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 장애물과 희망(AI Index : IOR 52/04/91)

래리 콕스  
전 국제엠네스티 사무부총장

이 글은 1991년 9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내 인권분과회의(Conference on the Dimension)의 일환으로 열린 사형에 관한 국제엠네스티 세미나의 발제문이다

사형은 처벌중에서도 가장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삶과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살인행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역사에서 폭력과 공포에 의한 지배를 한 사람들이 항상 이 사형제도를 열성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여타의 다른 인권들을 불법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국가들과 종종 일치한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모든 인권을 위한 투쟁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과, 폭정을 몰아낸 나라들에서 교수대와 총살대가 사라지는 등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예들 또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사회와 사형이 폐지된 사회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은 이러한 상관관계에서의 예외들이다.

나는 이러한 예외들 중의 한 나라인 미국에 - 발달된 민주주의사회에서 국가가 아직도 수인들을 처형하는 몇 안되는 사회 중의 하나 - 살고 있다. 미국은 2,500여 명의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교수대나 독가스실, 전기의자나 극약을 기다리고 있고, 지진이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형도 최고법원이 허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이 지배하고 그리고 성공할 경우 현재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거나 부당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많은 수인들의 집행을 보장하는 상소기회의 제한이나 폐지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강한 전통'이 살아 있는 나라이다. 동시에 미국은 이러한 사형에 대한 열광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는 나라이다. 너무나 가난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형수들을 기꺼이 변호해 주는 변호사들, 몇몇 국가에서 집행을 위한 의술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의사들, 사형의 본질적인 성격을 폭로하는 정보를 모아서 배포하는 사회과학자들, 무고한 사형수들에 대한 사례들을 파악

하여 여론화하는 기자들 그리고 편지를 쓰고, 탄원서를 돌리고, 모든 사형집행에 대한 철야 반대시위를 전개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공식적인 살인행위를 막으려는 이 운동에 가담한 우리들은 몇 가지 추악한 사실들과 당황스러운 질문에 직면해야 했다. 쓸모없고, 비인간적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나라들에서 폐지되고 있는 사형집행에 왜 우리의 동료 시민들은 집착하고 그것을 부르짖는 것인가? 인권을 지지하고, 어떤 상황에서의 고문도 반대하고, 국가권력이 어떤 수인들의 몸에 전선을 연결하여 끔찍한 고통을 느낄 때까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일삼는 나라들에 관한 소식에 접하고 놀람을 금치 못하는 시민들이 어찌하여 자기나라에서, 예를들면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수인들에게 전선을 연결하고 엄청난 양의 전기충격을 가하여 문자 그대로 지글지글 타 죽도록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환영할 만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정부가 사형을 존치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강요당해 왔다. 내가 이 질문을 이 자리에서 일부만이라도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사형을 철폐하려는 노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잔혹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주장들은 내 경험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고문이나 정치적 수감 등의 불법적인 잔혹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장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미국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사형을 찬성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왜 다른 나라들에서 고문이나 정치적인 구금을 국민들이 그저 조용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지지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은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형벌이기에 어떠한 조건에서도 금지된다는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반대운동을 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이 주장이 사람들에게 별로 거부감을 안 준다는 사실이다. 누구를 죽이는 것이 잔인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사형집행을 목격했거나 어떤 특정한 시각에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고받고, 그 시간이 오기까지 무력하게 붙잡혀있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든 간에 그것의 명백한 잔혹성을 확신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잔혹성을 부인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들은 이 잔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들은 인권유린을 합리화하기 위해 예전부터 수없이 사용된 주장을 무기로 삼는다.

첫째 사형은 잔인하고, 어쩌면 악랄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에게 잔혹행위를 가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해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살해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수인들을 살해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 어떤 잔혹행위가 어떠한 유효목적 을 위해 허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거부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이 주장에는 숨길 수 없는 결함이 있다. 수백 년동안의 경험과 셀 수 없이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나 개인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형이 어떠한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는 근거도 물론 없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에서 사형의 결과로서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줄어든 예는 찾아볼 수가 없다.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주들은 사형집행을 폐지한 주들보다도 살인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다. 최근의 몇 년 동안 텍사스주는 다른 어떤 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그렇다면 미국 상원사법위원회에 따를 때, 91년에는 어떤 주에서 가장 높은 살인범죄 증가율을 보였겠는가? 바로 텍사스주이다. 모든 연구와 통계자료가 똑같은 결론을 맺고 있다. 사형은 강력범죄를 줄이는데 어떠한 특별한 효과도 없으며 사형의 잔인성 덕분에 오히려 강력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감옥은 이미 범죄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무능력화할 수 있고, 또한 사형과는 달리 법의 잘못된 집행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형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돈조차 절약해 주지 못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예방책들과 재심청구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한 사람을 감옥에 40년동안 수감하는데 드는 비용의 두 배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고, 사형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이를 거부한다. 그런데 사형에 대한 옹호는 이성적인 주장과 논거들에 단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이다. 그것의 힘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다. 이 세계에는 그리고 특히 미국에는 많은 두려움이 존재한다. 미국내에서의 강력범죄는 오랜 세월동안 증가해 왔고, 집없음, 마약사용, 민간인의 무기소지율의 확산과 마찬가지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좌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흔히 이들의 지도자들과 언론에 의해 제안되는 대책은 사형이다. 그리고 사형이 이들에게 제안되는 유일한 대책일 경우, 이것이 실제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동일한 사람들에게 시민들의 두려움을 염두에 둔 어떠한 대안이 주어질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살인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찬성하느냐"는 것만을 물을 경우, 그들

은 압도적으로 -때로는 79%나- '예'라고 답한다. 그런데 질문에서 선택의 범위가 사형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두 가지로 넓어지게 되면 대부분은 종신형을 택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구금자의 가족에게 구금과 더불어 어떤 형태의 보복조치가 덧붙여진다면, 사형 찬성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사형찬성률이 24%까지 떨어졌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사면이 없는 말그대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종신형이라는 대안과 더불어 강력범죄의 원인을 형성하는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와 동시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확실한 검거 및 유죄판결이 증가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도대체 미국에서 누가 사형제도를 옹호하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 같다. 만약 사람들이 범죄를 막아보려는 방안으로 사형제도의 실패에 대한 정보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진지하게 표명하는 어떤 대안에 대해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행위의 유혹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이다.

사형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 '억제'는 새로운 주장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옹보'라는 것이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주장은 사람들이 사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인간사회로부터 분리될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인간사회 밖에서 그들은 더이상 인권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외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위의 주장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감정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증오이다.

이 주장은 매우 강력한 동시에 위험한 것이다. 이 주장이 위험하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때문에 고문을 받거나 재판없이 투옥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매우 강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이 있는 자들을 죽이고 싶게 만드는 범죄를 알고 있거나,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식, 또는 둘 다를 살해한 사건을 떠올려보면 된다.

그러나 '옹보'로서의 사형은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당하고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재판제도를 요구한다. 똑같은 죄, 또는 더한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서 단지 몇몇 사람들을 죽이는 제도는 '옹보'가 아니라 제물바치기이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 있는 제도이다. 나는 모든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범죄재판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명백한 희생이고,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몇몇 수인들을 제물바치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0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약 200명이 사형집행을 위해 추려진다.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다. 사형사건에 대한 재심리 결과에 의하면 1972년 이래 4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0년 이래 사형의 집행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세상에 알려진) 무고한 23명의 사형수들이 집행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불공정한 법의 집행을 밝혀낼 수 있는 노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만든 제도에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할 때 생기는 결과이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 경우에도 그 근거는 분명하다. 그것은 그들이 지은 범죄의 성격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지위, 그들의 피부색, 또는 그들이 죽인 사람의 피부색 또는 경제적 지위때문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지진아이거나 소수민족일 경우이고,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들은 종종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형의 80%는 흑인들에게 린치를 통해 죽이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주에서 집행되어 왔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사형논쟁에 있어서 인종문제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 상원의 회계위원회에서는 최근에 28건의 상이한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인종문제가 사형의 모든 단계 -고소, 선고, 집행- 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인종이 문제가 된다. 예를들어, 만약 조지아주에서 백인을 죽였다면 흑인을 죽였을 때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7배나 된다. 지난 주 뉴욕타임즈는 1면 머릿기사로 한 사형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이야기가 머릿기사로 처리된 이유는 지난 50년간, 그리고 1,000건이 넘는 사형집행 중에서 처음으로 백인이 흑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백인은 모두 백인만을 살해한 아홉번의 전과가 이미 있었다.

나는 미국의 범죄재판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비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범죄재판제도도 그것이 작동되는 사회의 편견과 불평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놀랍지는 않다. 진정으로 유감스럽지는 않지만 더럽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사람을 죽게도 살리게도 만드는데 쓰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이미 보통사람들보다 모자라는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그것을 선동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사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사람들에게 그들이 동일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결국에 죽이는 것은 훨씬 쉽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사형이 우리에게 내건 하나의 도전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인간의 폭력을 그저 더 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증오, 자신의 분노와 편견을 뛰어 넘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개방된 질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형폐지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한 나라가 사형을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폐지시킬 때마다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라는 답에 더 가까워진다. 다른 모든 폭력과 사회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계와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최근에 일어난 모든 '불가능한' 변화에 힘입어, 나는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나는 정부에 의한 인간의 살인행위가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로 불가능할 국가와 세계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스톡홀름 선언(Declaration of Stockholm)  
1977년 12월 11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북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온 200여명의 대표자 및 참가자로 구성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앰네스티 스톡홀름 회의는 다음 사항을 상기한다.

- 사형제도는 극도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임과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사형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

- 사형은 폭력행위이며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을 가진다.

- 사형을 부과하는 행위에 따르는 고뇌는 사형집행 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잔인한 고통을 안겨준다.

- 사형제도가 특별한 범죄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가 의문의 "실종", 불법처형, 정치적 살인 등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점점더 증가하고 있다.

-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가해질 위험도 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국가는 예외 없이 그 사법관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정치적 탄압 목적의 처형은 정부관리가 행하였든, 다른 사람이 행하였든간에 용납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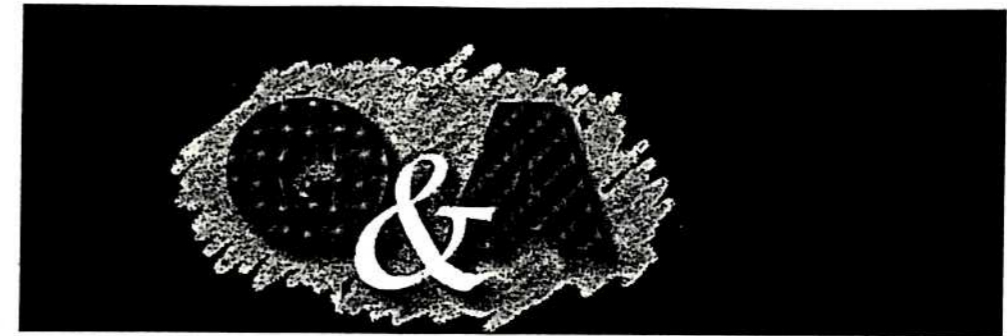
- 사형제도의 폐지는 국제법상 선포된 협약들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조치이다.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사형제도를 절대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 정부에 의하거나 정부가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사형제도도 규탄한다.

- 사형제도의 총체적인 폐지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다음 사항을 추구한다.
- 자국 및 국제적 민간단체들은 사형제도 폐지 목적의 홍보물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노력할 것.
- 세계의 모든 정부는 사형제도를 지체없이 철폐할 것.
- 국제연합은 사형제도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할 것.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문점과 앰네스티의 답변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찬반이론 역시 분명히 구분되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들이 사형폐지 운동에 대해 느끼는 가장 흔한 질문들을 모아 앰네스티가 답변의 형식으로 그 입장을 정리한 자료이다.

**Q** 사형은 폭력적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A** 여태까지 사형제도와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사형이 여타의 형벌과 비교해 특별한 억지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1980년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6차 유엔회의'에 제출된 유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형의 억지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의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는 못하였다."

1949-53년간의 '사형제도에 관한 영국왕립위원회'는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의 광범위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서에서 "우리가 검토한 어떤 자료에서도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증가했다거나, 사형 부활로 살인율이 감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1983년의 한 연구는 사형을 폐지한 14개국의 단기, 중기, 장기 살인율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조사대상국의 절반 이상에서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감소했다고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형집행 직후 살인율이 실제로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1093-63년간 뉴욕 주의 월간 살인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 다음 달에 평균 두 건의 살인사건이 더 발생하였다.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많은 범죄들이 엄청난 감정적 고조상태, 공포 또는 약물과 알코올의 영향하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Q** 사형이야말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아닌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범죄자들도 있지 않겠는가?

**A** 국가는 죄인을 처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처형이란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려 고의적이고도 용의주도하게 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의경심이 줄어들게 된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는 흔히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범인에게 책임소재를 가볍게 지우고 있다.

범죄학자들은 오랫동안 폭력범죄는 흔히 빈곤, 실업, 알코올중독, 결혼가정 등과 같은 여타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해왔다. 이런 문제들은 사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Q** 죄수를 사형시키는 대신 중신토록 교도소 내에 가두어두는 것이 더 가혹하지 않은가?

**A** 엠네스티는 사형제도가 극단적으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처형은 명백하게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처형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잔혹한 고통이다. 그 과정은 종종 살아 있는 죽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엠네스티가 입수하였던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처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법률상 중신토록이라도 재심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이 많다.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로 인정되어왔다.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Q** 사회의 기반 그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주의자, 테러리스트에 대해선 사형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A**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추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 명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형제도에 의존하게 되면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과 그 대의명분에 대한 순교자로 행세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형은 범죄의 억지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인책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Q** 엠네스티는 사형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사법체제 내에서 항소의 권리가 보장되고 증거주의의 기준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무고한 사람을 처형시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A** 사형은 최종적인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무고한 사람이 일단 처형되어버리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형이, 형벌의 한 형태로 남아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처형된 후 무고함이 밝혀진 사형수의 사례가 상당히 많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은 후 처형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고한 사람을 처형시킬 현저한 위험이 존재한다. 심지어 사형선고 후 수시간 내에 처형이 행해져서 항소나 사면청원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나라도 있다.

**Q** 사형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행해진다는 증거가 있는가?

**A**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법체제하에서도 선고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대중의 사형지지도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받기 마련이다. 똑같은 결과의 범죄, 그리고 동일한 상황의 범죄라 해도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미국 및 여타의 여러나라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기소된 사람들중 실제 사형을 선고받는 죄수들은 비교적 소수이다.

**Q** 국민여론이 사형을 지지하는 경우 어떻게 정부가 사형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

**A** 여론조사는 자칫 오도될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또한 대중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사실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가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사형폐지 운동과정을 통하여 엠네스티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를 접하기만 하면 그 주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엠네스티는 사형이 인권유린의 한 형태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정치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대중여론을 환기시키고 계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정치가들이 사형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사형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대중의 존경을 잃지 않았던 사례가 많다.

**Q** 추상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기란 쉽다. 그러나 자신의 가까운 친지가 살해되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A** 사형시킨다고 해서 살해된 피해자의 생명을 되찾지도 못하며 그 가족들의 손실을 덜어주지도 못한다. 범죄피해자의 친지들이 가지는 절박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사형된 죄수의 가족에게도 또한 슬픔과 고통을 야기시키며 폭력의 악순환만 더할 뿐이다. 그러한 피해자 가족들을 진정으로 돕고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보강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Q** 사형수를 중신토록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보다 사형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가?

**A10**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불어 사형제도 또한 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형벌이다. 왜냐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하고도 정밀한 항소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A11** 앰네스티가 일반 범죄로 인한 사형수보다는 차라리 양심수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A10** 앰네스티 활동의 핵심은 앰네스티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규약은 앰네스티 조직의 최고결정기구인 국제총회에서 확정된다. 규약 제1조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첫째 양심수의 석방, 둘째 정치적 수인의 공정한 재판, 셋째 어떤 경우이건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위해 활동한다. 이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앰네스티는 최선을 다하며, 최근 1985년 국제총회에서 여러차례 강조된 것처럼 사형폐지 운동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형수들 중에는 반드시 일반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수인과 양심수들도 오래동안 사형선고와 처형의 대상이 되어왔다.

**A12** 앰네스티가 생명권을 믿는다면 왜 낙태에는 반대하지 않는가?

**A13** 앰네스티의 규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앰네스티의 활동은 수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앰네스티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심의 영역을 언제나 제한시켜왔다. 낙태, 안락사, 대중위생과 영양공급 등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달리 많지만 그것들은 앰네스티의 활동범위 밖의 일이다. 앰네스티 회원 개개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겠으나 조직으로서의 앰네스티는 이들 문제에 관해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A14**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앰네스티가 사형의 시행을 찬성하는 특정종교를 모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가?

**A15**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각국정부에 청원하는 경우 앰네스티는 특정 정치이념이나 종교를 공격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부합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강조한다. 종교적 교리는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주요 종교들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자비를 명한다. 주요 종파의 단체들 중에는 사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단체도 많다.

**A16** 앰네스티의 활동으로 사형이 폐지된 나라가 있는가?

**A17** 앰네스티는 자신의 활동만으로 인권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결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저명한 정치적, 종교적,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도 인권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인권보장을 위한 한 기구로서의 앰네스티적 활동위상이 사형폐지의 과정에 일조를 할 수 있기 바란다.

실제로 진전사항이 있었다. 1975년 이래 일년에 최소한 일개국 이상이 법률상 사형을 폐지했거나,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후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나라들을 상대로 앰네스티는 사형폐지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해왔다. 국제법상으로도 사형폐지를 염두에 두고 그 시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발전사항이 있어 왔다.

**A18** 앰네스티의 회원으로서 자신은 사형을 지지하는 경우에도 사형폐지를 위해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A19** 앰네스티의 1981년 국제총회는 모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앰네스티의 모든 활동목적을 조건없이 동일하게 추구하라고 촉구하였다. 1985년 국제총회는 모든 지부들에게 앰네스티의 단위 그룹들이 수임사항의 여러가지 면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라고 요청하였다. 이 말은 사형폐지에 관해 의문을 가지는 회원들은 사형의 사실과 문제점들을 연구해 보고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라는 것이다. 앰네스티의 각국 지부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그 회원들에게 사형폐지의 주장과 논거를 교육시키도록 권고받고 있다.

전시의 사형제도 : 그 폐지에 관한 논의

최근 세계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향해 유사 이래 어느 때 보다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어떤 나라들은 일단계에 걸쳐 전면폐지에 도달했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선 두 단계에 걸쳐 진행시키고 있다. 우선은 보통 범죄만을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기로 결정하고, 차후 전면 폐지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단계가 장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생각되며, 많은 국가가 첫번째 단계에 고착, 장기간 동안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고는 과연 사형제도 폐지를 보통 범죄에 국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한 논거가 있을 수 있는 지를 고찰해 보려 한다. 또한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주제를 간략히 재고해 보고자 한다.

전시의 사형제도 : 폐지론

현재까지 52개의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16개국에서는 전시 범죄같은 예외적인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19개 국가에서는 헌법에 사형제도를 보존시키고는 있으나 최근 10년 또는 그 이상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왔다. 그리고 나머지 103개국에서 보통 범죄에 대해 계속 사형제를 보존, 실시하고 있다.

비록 사형제를 보존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계속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세계는 유사 이래 어느 때 보다 신속히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움직여가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일단계에 전면폐지에 도달했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선 우선 보통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고 후후 전면폐지로 나아간다는 두단계에 걸친 진행을 해오고 있다. 허나 두번째 단계가 장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오스트리아에선 그 단계에 18년이 걸렸으며, 덴마크는 45년, 핀란드 23년, 네덜란드 112년, 뉴질랜드 28년, 노르웨이 74년, 포르투갈 110년 그리고 스웨덴에서 51년이 각각 걸렸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일단계에 오랜 시간 고착, 머물러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전개가 느린 것은 단순히 평화시 실제문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탓 때문일 것일까? 혹은 사형제도 폐지를 전시 자행된 범죄를 포함하는 모든 범죄에 까지 확산시키지 못하는 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본고는 사형제도를 보통의 범죄에만 국한, 폐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왔던 전시 사형제도 보존을 위해 특별한 논거가 있을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려한다. 또한 국제법의 관점에서 본 주제를 간략히 재고해 보고자 한다.

1. 전시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보존의 찬반 논의

1991년 영국 상원에서 군법의 사형제도 폐지 제안을 놓고 벌인 논쟁에서 찬반 양쪽 모두의 연설자들은 반대할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상황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의 규정이 일반 규정과 다를 수는 없다고 진술했었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그 법질서 안에서 폐지의 원칙을 일단 인정하였으면, 그 원칙을 적용시키지 못할 예외적인 상황이란 것은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후 논의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국제협약 제2차 의정서는 이러한 논거의 경험과 분명하게 일치한다. 이 의정서는 이를 비준하는 국가에게 사형제를 전면 폐지할 의무를 부과하며, 유일한 예외로써 전시의 사형제도 보존을 의정서에 비준, 동의할 당시 그 취지에 대한 특정단서를 삽

입케 함으로써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에 맞춰 우리는 사형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의가 아닌, 예외에 대한 찬반론을 일반적인 폐지론의 접근법으로 고찰할 것이다.

a. 전시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와 생명의 권리

대개의 국제협정 및 결의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 문제를 생명의 권리라는 맥락에서 고찰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폐지론자는 사형이 모든 범죄에 대해 부과되건 예외적 범죄에 대해 부과되건 이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본권 (훼손될 수 없는 인간 기본권의 핵심에 속하는 생명의 권리)의 침해라고 간주한다. 반면 사형제도 보존론자는 사형제도는 생명권 향유의 합법적 예외라고 믿고 있다.

어느 입장 취하건 생명권의 맥락에서 예외적 범죄를 보통의 범죄로 부터 구별짓는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전시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사형제도 보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국과 동포를 배반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는 이라든가 혹은 '신성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논박하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이 어떤 경우 이해될만한 것이라고는 해도 완전히 납득할 만한 것은 아니다.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원칙을 일단 인정한다면, 아무리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하게 부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b. 전시 중 사형제도는 특별한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예를 들어 사형제가 다른 처벌보다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와 같은 실제적인 고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형제도의 전면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평화시에건 전시시에건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결코 특별한 범죄억제 효과를 나타내본 적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평화시에는 물론 전시에도 사형제도는 항상 궁극적인 억제책이었다고 믿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대해선 특별한 억제효과와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않지만, 광범위한 개별적 반응의 견지에서 볼때 사형제도의 억제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억제의 견지에서 볼때 범죄의 가혹성보다는 전시건 평화시에건 발견되어 처벌된다는 점의 유사성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사형제도 지지자들은 전시같은 예외적 상황에 관한 한, 수감이란 위협이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은 특히 유용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에 적응 도우려 하는 경우 대개 맹목적인 이상주의나 증오가 동기를 이루며, 반면 전시에 자주 사형 처리되곤 하는 또 다른 범주의 범법인 탈영을 하는 경우 공포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었다. 이러한 경우 범법자들은 주로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해 비이성적인 경향을 나타내므로 사형제도라는 위협은 어떤 경우에도 별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시는 누구에게나 죽음의 위협이 높은 때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은 그것이 평화시에 가질만한 특별한 억제효과를 오히려 쉽게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전시범죄와 관련된 억제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선 다른 논점들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가 억제책으로서 효과가 있기 위해선 그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자면 자연 사법적 보호장치는 소홀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이 처벌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도덕적인 견지에서 사형제도의 전면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서건 특히 전시 범죄에 관해서건, 비록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가 입증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져야 한다. 원칙의 견지에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실제적인 토론은 사형제도 보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결코 되지 않는 것이다.

c. 사형제도와 군대 규율의 유지

전시의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를 위해서 뿐 아니라 극도의 긴장과 과로 상태 하에서의 군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은 군사적 효능성과 사형제도 간의 각별한 관계가 입증된 적이 없었다. 반면 군인들의 전투의지를 결정케 하는데는 전적으로 다른 요소들, 즉 매국, 탈영 및 기타 전시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지식보다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려는 욕구같은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로 군 규율을 보호장치라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우에건 개인적인 경우에건 정의의 개념과는 무관한 목적이다.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는 선택을 함에 있어 군사적 효율성같은 일반적인 특징 요소가 영향력을 강하게 미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뿐더러 실제에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d. 보복

예외적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논쟁에서 보존주의자들은 종종 억제책같은 실제적인 논의보다는 "죄의 대가"라는 (위중한 범죄는 오직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도덕적 개념에 입장의 근거를 두곤 한다. "죄의 대가"라는 개념은 때로 복수의 내적, 외적인 의미와 밀접하게 결합한다. 전시에는 이성적인 답변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이 특히 우세하므로 그러한 입장에 찬성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답변이 우세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복의 이른바 맥락에서 보더라도 사형제도 폐지가 딱히 범죄의 위중함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위계를 세우는 것은 또 장기수감이란 판결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 것이다. 둘째 범죄정책 면에서 범법자의 갱생이나 또 다른 목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목표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필연적으로 폐지론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 자기방어와 사형제도의 유추

전시 범죄같은 예외적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논의들은 때로 자기방어와의 유사성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적에 대한 치명적인 무기사용의 정당화가 조건에 맞으려면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그 무기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법상의 폐지운동은 국제적 기준의 평화운동 (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서는 안되고)과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처벌에 호소하는 조건과 자기방어에 대한 그것은 분명히 틀리다. 한 국가 또는 개인이 또 다른 국가 또는 개인의 공격에 대해 (그 공격이 실제 일어난 시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 자기방어라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훨씬 이전에 일어난 개인의 공격(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내리는 계획적이고 냉혹한 처형이란 반응이 자기방어라는 제목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f. 전시의 자의적인 사형제도 남용

전시같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자의적으로 부과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 때는 강한 집단적 감정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사형제도는 매우 쉽게 남용될 수 있다. 또한 무장충돌시 매국노가 영웅으로 빨리 변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형제

도를 사용하게 되면 불가능하게 된다.

폐지론자들은 전시에는 사법 절차의 범실과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우선 전시에는 사법절차가 약식일 경향이 많다는 사실(재판은 좁은 밀폐된 방 속에서 적법한 항소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곤 한다.), 판결후 처형이 곧장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복수나 원한 같은 감정이 증인과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은 평화시보다 집행부로 부터 훨씬 비독립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군대는 전쟁 및 비상상태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단체이다. 전시 사형제도 보존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는 군내에 보유주의자의 숫자가 우세하다는 데 특히 중점을 둘 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반대하는 데는 최소한 두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은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인간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전체 인구의 대다수나 또는 군대 같은 특정 집단 인구의 대다수가 내린 결정에 따라 사형제도 보존을 허락하는 것은 문명의 기본적인 위반하는 것이 된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여론조사의 격하라는 것은 일반대중에 의한 것이건 특정집단에 의한 것이건, 종종 정확한 정보가 결여된 감정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여론 조사들은 단시간 안에 상당 부분 변경되곤 하며, 또한 어떻게 질문을 받았는가에 따라 답변도 매우 가변적이게 된다.

g. 국제법

국제법 상엔 일반적인 사형제도 금지조항이 없다. 그러나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항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에서 생명에 관한 권리에 관한 6항이 "폐지론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제시한다"는 말로 서술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유엔총회는 폐지론을 목표로 채택, 국제법의 기준에서 그 실행을 사형제도 사용에 대한 규제조치 및 보호장치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2차 선택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사형제도 폐지의 제한적 의무화가 삽입되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6차의정서 및 미주인권협약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선택의정서가 이러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상 세가지의 의정서는 이를 비준, 동의하는 국가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있다.

사형제도 사용의 규제를 제정한 문서에는 전시범죄같은 예외적 범죄에 대해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가장 위중한 범죄"라는 범주에 비추어 볼때 전시범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항에 따라 사형제도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안전한 결론은 일반적으로 특히 위중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전시범죄로 인해 유죄로 판명된 사람에게 사형을 판결하는 것은 협약 제6항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상기 인용한 세 의정서는 모두 예외적 범죄에 관한 특별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협약 제2의정서 2항은 이를 비준, 동의할 당시 각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시에 일어난 군사적 성격의 가장 위중한 범죄에 대해서 그 유죄판결에 따라 전시에 사형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지를 진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틀리지만 유럽협약 제6의정서 2항에는 각 국가는 전시 또는 분명한 전쟁위험이 있을때 행해진 행위에 대한 사형제도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6차 의정서는 다음과 같이 더욱 구속적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특별히 위중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전시에 일어난 군사적 성격을 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6차 의정서에는 처음 두가지의 규제사항이 없으며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분명한 전쟁 위험"이 있을 때를 포함시키고 있다. 게다가 6차 의정서는 2항을 모든 국가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반면, 2차 의정서는 각 국가에게 이를 비준, 동의할 당시 전시사형제도 보존을 희망하는 지 명백히 단서를 달게끔 하고 있다. 이 세가지 의정서는 모두 내전 동안 사형제도에 의지하려는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949년에 있었던 4차례의 제네바 규약 및 1977년 제정된 2개의 규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는 사형

제도에 의지하는 것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차협정 75조에 각각 전범이나 민간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제정되어 있다.

4차 협정 68조는 점령지 내에서 민간인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간첩행위, 점령군 군사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그리고 살인을 유발한 고의적인 범죄에 한하며, 점령된 그 지역내에서 유효하던 법령에 따라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건에 한한다고 제정하고 있다.

비국제적 무장충돌에 대해서는 1977년 제정된 제2추가의정서 6항 4종에 범행시 18세 이하였던 사람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며 임신부 및 어린 자녀를 가진 여자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계사형제도 폐지현황  
(1994년 12월 통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현황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94년 12월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54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고 15개 국가가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또한 27개 국가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였다. 이 27개 국가는 사형제도가 법률상 존재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한번도 사형집행이 실행되지 않았다. 현재 존치국은 97개국이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96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전체비율로 볼때 49.7%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매년 2개 국가가 사형을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1.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54개국)

안도라(1990년), 앙골라(1992년), 호주(1985년), 오스트리아(1968년), 캄보디아(1989년), 케이프 베르드(1981년), 콜롬비아(1910년), 코스타리카(1877년), 크로아티아(1990년), 체첸공화국(1990년), 덴마크(1978년), 도미니카공화국(1966년), 에쿠아도르(1906년), 핀란드(1972년), 프랑스(1981년), 잠비아(1993년), 독일(1949년/1987년), 그리스(1993년), 기니비사우(1993년), 아이티(1987년), 온두라스(1956년), 홍콩(1993년), 헝가리(1990년), 아이슬란드(1928년), 에이레(1990년), 이탈리아(1994년), 키리바티, 리히텐슈타인(1987년), 룩셈부르크(1979년), 마케도니아, 마살제도, 미크로네시아, 모나코(1962년), 모잠비크(1990년), 나미비아(1990년), 네덜란드(1982년), 뉴질랜드(1989년), 니카라과(1979년), 노르웨이(1979년), 파나마, 포르투갈(1976년), 루마니아(1989년), 산마리노(1865년), 사오롬 프린시프(1990년), 슬로베크공화국(1990년), 슬로베니아(1989년), 솔로몬제도, 스웨덴(1972년), 스위스(1992년), 투발루, 우루과이(1907년), 바누아투, 바티칸시티(1969년), 베네주엘라(1863년)

2. 일반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 (15개국)

아르헨티나(1984년), 브라질(1979년), 캐나다(1976년), 사이프러스(1983년), 엘살바도르(1983년), 피지(1979년), 이스라엘(1954년), 말타(1971년), 멕시코, 네팔(1990년), 파라과이(1992년), 페루(1979년), 세이셸레스, 스페인(1978년), 영국(1973년)

3.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 (27개국)

바레인(1977년), 벨기에(1950년), 버뮤다(1977년), 부탄(1964년), 볼리비아(1974년), 브루나이 다루살람(1957년), 브룬디(1982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1981년), 콩고(1982년), 코모로스,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마다가스카르(1958년), 몰디브(1952년), 말리(1980년), 나우루, 니제르(1976년), 파푸아뉴기니아(1950년), 필리핀(1976년), 르완다(1982년), 서사모아, 세네갈(1967년), 스리랑카(1976년), 수리남(1984년), 토고, 통가(1982년), 터키(1984년)

4. 1976년 이후 사형을 폐지한 국가

- \* 1976년: 포르투갈(A), 캐나다(B)
- \* 1978년: 덴마크(A), 스페인(B)
- \* 1979년: 룩셈부르크(A), 니카라과(A), 노르웨이(A), 브라질(B), 피지(B), 페루(B)
- \* 1981년: 프랑스(A), 케이프베르드(A)
- \* 1982년: 네덜란드(A)

- \* 1983년: 사이프러스(B), 엘살바도르(B)
- \* 1984년: 아르헨티나(B), 호주(B)
- \* 1985년: 호주(A)
- \* 1987년: 아이티(A), 릭텐스타인(A), 서독(A)
- \* 1989년: 캄보디아(A), 뉴질랜드(A), 루마니아(A), 슬로베니아(A)
- \* 1990년: 안도라(A), 크로아티아(A), 체첸/슬로바키아연공(A), 헝가리(A), 에이레(A), 모잠비크(A), 나미비아(A), 사오롬 프린시프(A), 네팔(B)
- \* 1992년: 앙골라(A), 스위스(A), 파라과이(B)
- \* 1993년: 잠비아(A), 그리스(A), 기니비사우(A), 홍콩(A)
- \* 1994년: 이탈리아(A)

A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B -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 사형제도 시행현황 및 통계

#### 1. 사형제도 폐지국과 존치국

현재 세계 절반정도의 국가가 법률상 혹은 실제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55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 \* 15개 국가가 전시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 \* 27개 국가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였다. 이들 국가는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치하나, 지난 10년간 한번도 사형집행이 없었다.
- 총 97개 국가가 법적으로 혹은 실제상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나머지 97개 국가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집행도 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해마다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아래 4항 참조)

#### 2. 사형제도폐지 캠페인의 성과

1976년 이래로 매년 평균 2개 국가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반 범죄 혹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1989년 이후로 21개 국가에서 일반범죄 혹은 모든 범죄에 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들 국가는 다음과 같다.

-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모잠비크, 잠비아, 기니공화국
- \* 남 미 : 파라과이
- \* 아시아 : 캄보디아, 네팔
- \* 동유럽 : 슬로베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첸공화국
- \* 서유럽 :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 \* 태평양 연안 : 뉴질랜드

#### 3. 사형제도 재도입국

이전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던 나라들 중에서 드물게 사형제도를 재도입하는 국가들이 있다. 1985년 이래로 24개 나라가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일반범죄 혹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에 단지 3개의 사형폐지국들이 사형제도를 재도입하였다. 이들 국가 중 하나인 "네팔"은 또 다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다른 2개국 파푸아 뉴기니와 필리핀도 재도입후 어떠한 집행도 하지 않았다.

#### 4. 사형선고와 집행

지난 1994년 한해동안 37개 국가에서 2,3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75개 국가에서 모두 4,032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수치는 단지 국제앰네스티에 보고된 수치일 뿐이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상당수의 국가들이 대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1,791명, 이라크에서 139명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100명 이상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1994년 한해동안 세계의 사형집행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의하면



이들 3개국의 사형집행 수가 전체 수치의 8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라크에서 수백 명의 사형집행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이러한 대다수의 정보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

#### 5.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형제도

국제인권협약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사형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미주인권협약 및 어린이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00개 이상의 국가들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거나 위와 같은 조항들을 암시적으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

1990년부터 5개국 즉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에서는 일반범죄에 관하여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사형집행되고 있다. 1990년 이후 미국에서는 6명의 청소년이 사형집행되었으며, 이 숫자는 5개국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 6. 사형제도 존폐 논쟁

어떠한 과학적 연구도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1988년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된 최근의 조사연구는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냈다. "사형제도가 종신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조만간 사형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 줄 어떤 긍정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 7. 범죄율과 사형제도

사형제도와 범죄율에 관한 많은 연구서들 중 1988년 유엔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가 사형제도를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범죄율의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최근 사형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국가가 사형을 폐지할 때 범죄율에 대단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아무런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살인자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기전인 1975년에는 인구 100,000명당 3.09명이 살해되었으나, 1980년에는 2.41명이다. 사형을 폐지한지 17년이 지난 1993년에는 살인율이 인구 100,000명당 2.19명으로 1975년보다 무려 27%나 낮아졌다. 캐나다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체 살인율은 1993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 8.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협약

최근 몇년동안 가장 괄목할 만한 진전은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제협약을 도입한 사실이다. 다음의 협약들이 그것들이다.

- 28개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4개 국가들이 조만간 가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 23개의 유럽국가들은 유럽인권협약의 제6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3개국이 동의하였다.
- 미주인권협약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의정서에는 미주의 3개국이 비준하였으며, 4개국이 동의

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의 제6의정서는 평화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두개의 의정서는 전체적으로 사형을 반대하지만, 전시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가 원한다면 사형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9. 오판에 의한 집행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집행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1987년의 한 연구서에 의하면, 1900년에서 1985년 사이 미국에서 사형집행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무고한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몇몇은 사형집행 직전에 무죄가 입증되었으나, 23명은 실제 집행되었다.

1993년 10월 미국의회의 시민적 및 헌법상 권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972년 이래로 사형수 48명에 대한 선고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부당한 사형선고를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한 법적 안전장치에 대하여 비난하였으며, 재판과정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나열하였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날의 경험에 비추어, 실제 사형선고를 받은 수인들 중 무고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 중 몇몇은 실제 집행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제목 : [사형폐지] 94 인권보고서 발췌

사형제도: 인권에 대한 총체적 침해

( 94 연례보고서에서 발췌 )

국제앰네스티는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며, 사형철폐의 확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간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사형집행에 직면하고 있는 수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정치가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흔히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힘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사형제도가 임의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캠페인과 홍보를 통하여 사형제도가 사회범죄물이나 정치적 폭력의 발생물을 억제하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함시적으로 사형선고와 집행을 감시하고 압박한 집행이 있는 곳은 어디이든지 간에 자비를 호소하여 왔다.

93년에 있는 회소식은 사형폐지국에 4개의 나라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2월 기니비사우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헌법개정 이전 군법정에서는 살인자나 국가안보 침해자에게 사형을 부과하였었다. 4월에는 홍콩의 입법회의와 캄보디아의 하원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철폐를 표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월에 그리스가 전시를 포함한 모든 시기에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철폐하였다.

또 다른 긍정적인 진전으로는 많은 영연방국의 최고항소법정인 영국추밀원내 사법위원회 판결이 있었다. 이 사법위원회는 5년이상 대기중인 수인에 대한 집행실행은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 위원회는 사형선고후 5년이상 수감되어 있는 수인들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4년동안 사형을 대기중이던 2명의 자마이카인 사례에 관한 추밀원 사법위원회의 이러한 판결은 최소 16개 영연방국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이 판결의 결과로 자마이카에 있는 100여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감형이 기대된다.

또 하나의 소식은 1월의 미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이다. 미연방 최고재판소는 형선고 이후 무죄의 증거를 제출하는 사형수들에게 사형집행 이전 연방법원에서 새로운 심리를 가질 기회가 일반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텍사스의 수인중 사형선고에 대하여 항소하였던 레오넬 헤레라씨는 3월 12일 사형집행되었다. 93년도에 미국에서는 총 38명이 사형집행되었으며, 이중 17건이 텍사스주에서 집행되었다. 38명중 4명은 사형선고 당시 17세인 미성년자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전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이며 수많은 국제조약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과 페루에서 사형제도를 재도입한 사실과 적용범위의 확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12월 필리핀은 살인, 마약거래, 강간 및 방

화범 등을 포함한 일반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재도입하였다. 필리핀은 지난 1987년도에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9월 페루의 국회는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이 헌법은 테러리즘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로 승인된 이 헌법은 78년 페루가 비준한 미주인권협약 제4조 2항에 위배된다. 이 협약에는 사형제도가 현재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하여 확대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지난 3월에 발생한, 3년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고 있는 일본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다. 같은 달 교수형된 3명중 한명은 정신적으로 고통을당하고 있었다. 76년 이후 한해동안 집행된 경우 중 가장 많은 숫자인 7명이 지난해 일본에서 사형집행되었다. 쿠웨이트 역시 사형집행이 재개되고 있다. 3월 쿠웨이트정부는 지난 90/91년 점령당시 이라크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로 이라크민족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89년 이래로 쿠웨이트당국에 의해 시행된 첫 사법적 사형집행기록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92년 4월 이후 이라크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22명의 사형수들이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규준"에 부합되는 재판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사형집행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알제리에서 3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이 재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93년 한해동안 26명이 사형집행되었으며, 300명 이상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에 의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93년 한해동안 각각 33명과 87명의 사형집행이 발생한 이집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사형집행의 재개에 관해 보고하였다. 93년 이란에서도 실제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적어도 77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적으로 사형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93년 한해동안 1,400여 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에쿠아도르, 캄비아, 모잠비크, 파나마, 슬로베니아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등의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

93년말 현재 전세계 국가의 47%가 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53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였고, 16개 국가는 전시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21개 국가와 지역이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치하지만 최소 10년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93년 한해동안 1,831명이 32개 국가에서 사형집행되었으며, 61개국가의 3,670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사례만을 포함한 것이다. 실제수치는 훨씬 높다. 이전에 비추어 많은 나라들이 더욱더 사형집행을 많이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5년 1월 25일 국제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씨가  
한국의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온 공개서한  
( Ref: TG ASA 25/95.02 )

법무부장관님께,

한국에서는 1994년 한해동안 15명이 사형되었습니다. 이것은 1992년 이후 첫 집행이었으며 또한 가장 많은 수의 집행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는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사형제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관심을 표명하고, 귀국 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0월 6일 15명의 사형수들이 서울, 대구, 부산에 있는 교도소에서 사형되었습니다. 남한에는 살인죄로 구금된 약 50명의 수인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대기중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형을 반대합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집행일이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사형수들이 항상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으며, 일부는 항상 수감에 채워진 채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사형수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형폐지의 세계적 추세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결정한 국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1993년도에, 네팔은 1990년, 뉴질랜드는 1989년 그리고 호주는 1985년도에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 역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산업화된 국가들중 일본과 미국의 37개주 그리고 한국만이 사형을 존치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15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법무부장관은 한국에서 사형제도는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지는 형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날 사형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형제도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형제도는 범죄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형은 무죄인 사람에게 무고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희생자들 중 많은 수는 가난으로 인해 효과적인 법률적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형폐지의 세계적 추세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은 이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동협약의 제6조에는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형제도는 정치적 범죄를 포함하여 약 100여가지의 범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형수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사형선고는 때때로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4년 11월 검사들은 안재구씨에게 간첩죄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후 안재구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안재구씨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그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992년 7월 한국정부의 인권보고서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에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수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형은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이며 자의적인 형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의 최고형태라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한국에서는 사형집행여부가 법무부장관인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사형집행에 대한명령은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최종 심후 6개월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사형집행은 장기간 연기되며, 집행명령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1994년 10월에 실시된 사형집행 역시, 지난 9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지존파사건에 대한 임시대용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개인적 입장은 별개로 두더라도, 두명의 전임 법무부장관들은 재임기간중 집행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사형수들은 자신들이 언제 집행될 지 모르며 항상 두려움 속에서 생활합니다. 사실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일에도 자신의 집행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전에 집행이 공표되는 것도 아니며, 가족들 역시 어떠한 정보도 입수하지 못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들과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지난 10월 6일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형수들이 느낀 격렬한 두려움에 관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교도소에는 약 45명의 사형수들이 있었고 이중 10명이 집행되었지만, 사형수들 중 아무도 왜 이들 10명이 선택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형수들 중 일부는 24시간동안 수감이 채워진 채 구금되어 있습니다. 1994년 10월 법무부 관계자들은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수인에게만 수감을 채운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수에 대해 24시간 수감을 채우는 것은 자의적으로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엔의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정"에는 수감을 포함한 "제재도구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보다 더 연장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33조, 34조 )

사형은 범죄억제효과를 가진 유일한 형벌이 아닙니다.

1994년 10월 법무부관계자들은 범죄억제를 위해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폭력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한국정부가 범죄발생률에 대한 사형제도의 영향력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알기로는 어느 국가에서도 사형제도가 폭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은 종종 자신을 잘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사형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고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과 부딪치게 됩니다. 남한의 일부 사형수들은 빈민출신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없는 사형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형수들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세의 김철오씨는 1990년 9월에 체포된 후 경찰관들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19세였으며 그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철오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 받았는데 재판이 열리기전 아주 짧은 시간동안 단 한차례 그의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철오씨는 효과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철오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인 모하마드 아자르씨와 아미르 자밀씨는 1992년 9월에 체포된 후 자신들은 고문 받았

으며, 법정은 "자백"에 주로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

- 1)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 2) 사형폐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한국정부는 집행유예를 유보하고,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여야 합니다.
- 3) 한국정부는 사형수들에게 항상 수감채우는 행위를 종식하여야 합니다.
- 4) 한국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야 합니다.
- 5) 일부 사형수들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설립하여야 합니다.

저는 귀국 정부가 이 서신에 언급한 저희 국제앰네스티의 주장과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줄 것을 희망하며, 귀하의 답변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피에르 샤페  
국제사무총장

사형대기중인 한국의 사형수들 ( 1994년 5월 현재 )

이 자료에서는 2명내지 5명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련번호	사건번호	이름	죄명	형확정일
1	87-558	차순석	살인	1987. 4. 28
2	87-1946	서채택	살인 및 절도	1987. 10. 26
3	87-2533	김만수	살인 및 기타	1988. 3. 8
4	89-724	임남형	살인 및 절도	1989. 6. 27
5	89-2066	이독재	살인 및 기타	1989. 10. 24
6	90-271	김순자	살인 및 절도	1990. 4. 10
7	90-1691	박송규	살인 및 기타	1990. 6. 14
8	90 CA2511	임상출	살인 및 기타	1991. 2. 8
9	90 CA3090	임영자	살인	1991. 3. 8
10	90 CA3090	한춘도	살인	1991. 3. 8
11	91 CA55	김중석	방화 및 우발적 살인	1991. 3. 12
12	91 CA3788	전기철	강도 및 미성년 성폭행	1991. 3. 15
13	91 CA72	강순철	살인 및 절도	1991. 4. 12
14	91 CA610	김무경	강도 및 어린이 유괴	1991. 5. 24
15	91 CA584m	조현철	살인 및 절도	1991. 6. 14
16	91 CA933	이건호	살인 및 기타	1991. 6. 25
17	91 CA1152	최명복	살인 및 기타	1991. 7. 23
19	91 CA1169	변운연	살인 및 기타	1991. 7. 26
20	91 CA1014	신민철	존속살해	1991. 8. 13
21	91 CA1466	김동식	살인 및 기타	1991. 8. 27
22	91 CA1345	배진순	특수절도 및 강간	1991. 8. 27
23	91 CA1345	김철우	특수절도 및 강간	1991. 8. 27
24	91 CA1993	오태환	살인 및 절도	1991. 11. 8
25	91 CA2404	김대형	살인 및 절도	1991. 11. 26
26	91 CA2261	박현룡	절도 및 강간	1991. 12. 10
27	91 CA2425	지춘길	방화	1991. 12. 10
28	91 CA2514	송종호	살인 및 기타	1991. 12. 10
29	91 CA2764	임풍식	살인 및 기타	1991. 12. 24
30	91 CA3326	이형길	존속살해	1991. 12. 25
31	92 CA668	김준영	살인	1992. 5. 8
32	92 CA356	김영환	살인 및 기타	1992. 5. 26
33	92 CA873	김용계	살인 및 기타	1992. 6. 9
34	92 CA935	한재숙	살인	1992. 6. 26
34	92 CA1241	신종우	살인 및 기타	1992. 8. 18
35	92 CA1270	문성도	강도 및 어린이 유괴	1992. 8. 18
36	92 CA1989	곽도화	살인	1992. 10. 13
37	92 CA1989	오승관	살인	1992. 10. 13
38	92 CA2148	장중건	살인 및 절도	1992. 10. 23
39	92 CA1613	이두규	강도 및 어린이 유괴	1992. 10. 27
40	92 CA2085	이상수	살인 및 강간	1992. 11. 10

41	92 CA2085	전 장 호	살인 및 강간	1992. 11. 10
42	92 CA2393	유 영 택	살인	1992. 11. 24
43	92 CA2115	정 은 희	살인 및 기타	1992. 11. 24
44	92 CA2472	태 규 식	살인	1992. 10. 20
45	92 CA917	김 성 도	살인 및 사체유기	1993. 2. 13
46	93 CA494	Amir Jail *	살인 및 사체유기	1993. 5. 14
47	93 CA494	Mian Mohamaz Akad	살인 및 사체유기	1993. 5. 14
48	1045	서 혁 빈	강도 및 어린이 유괴	1993. 6. 8
49	93 A29450	박 기 태	살인 및 절도	1993. 6. 10
50	1549	김 진 태	존속살해	1993. 7. 27

C - 범죄유형

A - 최종 항소

\* - 파키스탄인

(참조) 이 자료는 영문을 번역한 것이므로 오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94년 1월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씨가 미국의 대통령 빌클린턴에게 보낸 미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개서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서한에서 국제엠네스티는 미국의 사형실태에 대해 비판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사형제도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사형문제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AI Index : AMR 51/01/94)

가난한 사람, 소수계층, 정신적 장애자 그리고 정신박약자 등과 같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법률적 조력없이 불평등하게 사형이 부과되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이와같은 수치스러운 상황은 미국연방 당국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미국대법원에게 이러한 국가제도의 불공평함을 개선하는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미국연방 행정부는 헌법상의 강력범죄를 범한 미국시민들과 국가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국제엠네스티는 미국대통령에게 현재 미국의 모든 사형제도 실태와 양상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사형제도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를 요구한다. 국제인권단체로서 국제엠네스티는 미국의 개별 주에서 사형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과 연방법에서 사형을 재도입하려는 시도 그리고 개별 주에서 수인들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과거 미국행정부는 “사형은 주로 주정부의 문제이고 연방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논쟁에 관하여 국제엠네스티와 토론하여 왔다. 개별 주 당국의 활동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개별 주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미국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재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사형제도의 운용은 임의적이고 불공평하며 소수인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자료화된 폭넓은 증거가 있다. 미국시민들은, 국제인권기구와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장치에 위배되며 심각한 결함이 있는 개별 주정부의 법률절차에 자신들의 생명을 맡겨 왔다.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미국시민들에게 사형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미국헌법을 준수할 것을 미국연방정부에게 촉구한다.

사형문제에 관한 모든 측면들을 연구하는 “사형제도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의 설치는 미국 내 개별 주들과 사형 존치국에게 좋은 시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사형제도에 대한 정치적, 감정적 자세로부터 사형문제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자문기구의 보고와 권고사항들은 연방관리, 법률가 그리고 국민에게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 과정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미국정부에게 미국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정부의 기능중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위만큼 심각한 것은 없다. 현재 2,750명

이상의 남성, 여성, 소년범들이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중이다. 1977년 이후 223명 이상 사형되었고 93년 한 해 동안 35명이 사형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정부는 사형제도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합헌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형벌이 바람직한지 총체적인 검토를 할 때이다.

미국정부는 “사형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국제앰네스티가 제기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사형제도와 국제적 인권: 사형제도의 존치는 미국이 이전의 ‘공약들’과 맞지 않으며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2. 법의 공평한 보호: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형은 인종의 토대에서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사형선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차별은 오랜기간 인종차별을 해온 주들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3. 정신장애자와 정신박약자에 대한 사형집행: 많은 정신장애자와 정신박약자들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는 사형집행을 위한 정신장애와 정신이상의 어떠한 이해될 만한 정의도 없이 집행되었다. 사형제도가 목적하고 있는 “심각한 도덕장애자”의 범주에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4. 사형과 소년범: 미국은 국제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당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많은 미성년자들은 기본적 공평성에 관한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 사례에서는 피고가 미성년이라는 사실이 형량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별적 평가도 없었다.
5. 사형제도에 대한 검사의 권한: 연구보고서는 계급, 인종, 정책 그리고 죄를 범한 장소와 같은 요인들이, 범죄 그 자체보다도 사형을 선고하려는 검찰의 의지에 더욱 결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6. 재판과 항소를 위한 도움에 대한 규정: 사형을 선고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기한 법률적 항의는 가끔 여러가지 조건이 결의되어 있다. 피고인의 담당변호사는 번번이 자질이 부족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기초적 조사활동과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없다. 텍사스에서의 상황은 특별한 관심사항이다. 최근 몇 년동안 집행된 일련의 수인들의 경우는 이전에 사형사건을 취급해 본 적이 없는 변호사들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
7. 사형선고를 검토하는 인신보호 영장: 이 제도는 사형선고에 있어 오류를 수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대법원의 판결은 구제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좁혀가고 있다. 그 결과 오판일 수도 있는 일련의 수인들에 대한 집행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8. 무고한 사람을 집행할 가능성: 사형제도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현재의 법률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경우에서 사법적 오류는 이미 발생하였으며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9. 실제적인 관용: 관용의 조건은 실제에 있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관용은 일부 주에서는 죽은 문자이다. 부당한 사형집행에 대한 전통적인 마지막 보호장치는 대개 정치적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
10. 범죄억지효과: 용보, 범죄예방기능 그리고 교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수인을 사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조사된 연구내용은 다른 형벌보다 사형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범죄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11. 사형에 대한 국민정서: 비록 일부 여론조사가 사형제도를 일반국민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 변화할 수 있다. 일반국민들은 폭력적인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원한다. 이러한 보호는 다른 형벌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연구보고서는 일반국민들이 사형의 대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1977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조인하였다. 그리고 1992년 4월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리고 1977년 미주인권장전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지금까지 비준되지 않고 있다. 미국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6조는 헌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미국정부에게 즉각적으로 이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미국에는 12개주에서 최소한 36명의 소년범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소년범의 대부분이 최빈민계층 출신이며 평균이하의 지능과 정신이상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도 3명의 소년범(한 명은 라틴계, 두 명은 흑인)이 사형집행되었다. 두 명은 텍사스주에서 사형되었고, 한 명은 미조리주(60년만에 처음으로)에서 사형되었다.

1993년동안 미국에서 사형집행된 수인들

(AI Index:AMR 51/02 94)

자료번호	집행일	수인이름	주	사형방법	인종	피해자
1/189/1	01/05	Westley DODD	WA	H	W	3W
2/190/18	01/19	Charles STAMPER	VA	E	B	3W
3/191/8	01/27	Martsay BOLDER	MO	LI	B	B
4/192/2	03/03	John BREWER	AZ	LI	W	W
5/193/2	03/03	James Allen RED DOG	DE	LI	N	W
6/194/21	03/05	Robert SAWYER	LA	LI	W	W
7/195/19	03/18	Syvasky POYNER	VA	E	B	4W 1B
8/196/55	03/23	Cariws SANTANA	TX	LI	L	L
9/197/56	03/25	Ramon MONTOYA	TX	LI	L	W
10/198/3	04/14	James D.CLARK	AZ	LI	W	4W
11/199/30	04/21	Robert HINDERSON	FL	E	W	3W
12/200/57	05/04	Darryl STEWART	TX	LI	B	W
13/201/31	05/05	Larry Joe JOHNSON	FL	E	W	W
14/202/58	05/12	Leonel HERRERA	TX	LI	L	L
15/203/59	05/18	John SAWYERS	TX	LI	W	W
16/204/20	06/17	Andrew CHABROL	VA	E	W	W
17/205/60	06/29	Markham DUFF-SMITH	TX	LI	W	W
18/206/16	06/29	Thomas Dean STEVENI	GA	E	W	W
19/207/61	07/01	Curtis Paul HARRIS	TX	LI	B	W
20/208/9	07/21	Walter BLAIR	MO	LI	B	W
21/209/10	07/28	Frederick LASHLEY	MO	LI	B	B
22/210/62	07/30	Danny HARRIS	TX	LI	B	W
23/211/63	08/05	Joseph JERNIGAN	TX	LI	W	W
24/212/64	08/12	David HOLLAND	TX	LI	W	W
25/213/65	08/20	Carl KELLY	TX	LI	B	W
26/214/66	08/24	Ruben CANTU	TX	LI	L	L
27/215/2	08/24	David MASON	CA	G	W	5W
28/216/32	08/25	Michael DUROCHER	FL	E	W	3W
29/217/67	08/31	Richard WILKERSON	TX	LI	B	W
30/218/3	08/31	Kenneth DESHIELDS	DE	LI	B	W
31/219/68	09/03	Johnny JAMES	TX	LI	W	W
32/220/21	09/14	Joe Loues WISE,Sr.	VA	E	B	W
33/221/69	09/28	Antonio BONHAM	TX	LI	B	W
34/222/11	10/06	Frank GUINAN	MO	LI	W	W
35/223/70	11/10	Anthony COOK	TX	LI	W	W
36/224/17	12/07	Christopher BURGER	GA	E	W	W
37/225/71	12/15	Clifford PHILLIPS	TX	LI	B	W
38/226/22	12/07	David PRUETT	VA	E	W	W

% 사형방법: (E:전기 G:가스 H:교수형 LI:주사주입)

% 인종: (B:흑인 L:라틴아메리카계 N:원주민 인디안 W:백인)

W 19  
B 14  
L 4  
N 1

1993년의 사형선고와 집행에 관한 통계

(AI Index: ACT 51/01/94)

1993년에는 61개국에서 3,28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계는 국제앰네스티에 알려진 것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통계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동안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알제리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베넌 보스니아-헤르체코 비나 불가리아 칠레 중국 모로코 트디브아르 쿠바 이집트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가봉 가나 기이아나 인디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자마йка 일본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리베리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라위 마우리티우스 몰도바 몽고 모로코 니제리아 파키스탄 폴란드 세인트 빈센트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 리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수단 스와질랜드 타지키스탄 타이완 탄자니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코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연합 미국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1993년동안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방글라데시 중국 이집트적도 기니 그루지야공화국 가나인도 인도네시아 이란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크공화국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베리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수단 시리아 타이완 터크멘공화국 우간다 미국 예멘

국제앰네스티는 1993년동안 중국에서 1,411명이 사형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실제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알려진 세계의 모든 사형집행수치의 77%이다.

사형폐지 소식

그리스

완전한 폐지

93년 12월 16일 그리스 국회는 사형제도를 제한없이 폐지하자는 법률 2172번을 통과시켰다. 이 법 33조는 평화시는 물론 전쟁시에도 적용된다. 브고에 의하면 그리스는 조만간 유럽인권협정 제6선택의정서를 조인할 예정이다.

그리스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은 계엄령하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72년 8월 25일 실시되었었다. 그 후, 사형선고가 그리스법정에 의해 있었지만 이들 모두는 대통령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었다. 이로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의 수는 53개국이다.

덴마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

94년 2월 24일 덴마크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에 조인하였다.

덴마크 1930년 보통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고 전시의 범조직에 대해 서단 군사형법하에서 사형이 존속되어 왔다. 2차세계대전 직후에는 특별소급법이 제정되어 독일점령시에 발생하였던 전쟁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한 적이 있다. 이 당시 46명의 사람들이 사형집행되었다. 78년에는 전시 및 외국군이 점령할 동안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기 위해 52년에 제정된 법률이 폐지되었다. 이 법률의 폐지는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93년 12월, 2차세계대전 후 통과되었던 소급법이 폐지됨으로써 덴마크가 제2선택의정서를 조인함에 있어 마지막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었다.

모로코

195명의 사형선고자에 대한 국왕의 감형

모로코 국왕은 33년동안의 치적을 위해 지난 3월 5일 195명의 사형선고자를 무기형으로 감형하였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마지막 전기의자

버지니아주는 통산 259번제로 전기의자를 사용하였다. 전기의자의 마지막 사용은 94년 3월 3일에 있는 그린스필 코렉셔널센터에서의 조니 왓킨스에 대한 집행일 것이다.

지난 86년간 버지니아주는 259명의 수인들을 사형집행하는데 전기의자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94년 7월 1일 부터는 집행예정인 수인들에게 전기의자와 극독주사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대부분의 수인들은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극독주사의 경우 치사액을 주입하기 전에 수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포르노비디오 취급자에 대한 사형인정

지난 12월, 이란 국회는 포르노비디오물의 제조 및 판매자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만약 제작 및 판매자들이 소위 "지구를 타락"시킨 사실이 입증되면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 법률은 12명의 종교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호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제도 소식

파키스탄  
사면된 14세 소년사형수

2월 23일 살라마트와 레마트 마시는 불경혐의를 벗고 사형선고가 취하되었다. 살라마트 마시는 당시 14세의 나이로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1993년 5월 11일 한 회교사원의 지도자가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독하는 글귀를 회교사원의 벽에 쓴 세명의 기독교인을 고발하였다. 살라마트를 비롯한 이 세명은 바로 그날 불경죄로 체포되었고, 1995년 2월 9일 유죄로 판명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세명의 피고인중 한명은 작년말 재판도중 살해되었다. 재판기간중 빈번한 폭력시위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계속적으로 살해위험을 받았다.

사면후 이들이 파키스탄에 남아 있을 경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들이 이들에게 망명지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독일로 망명하였다.

이 사례는 파키스탄내에서 상당한 논쟁을 일으켰으며, 국제적으로도 거센 항의가 있었다. 지난해 회교 근본주의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정부는 불경죄에 관한 법률을 인정하면서도 1992년 이후부터 사형제도가 불경에 대한 의무적인 형량으로 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을 도입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은 범행당시 18세이하인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정부는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내법이 이 협약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1990년 이후 세계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4개국중 하나이다.

파푸아 뉴기니  
첫 사형선고

1991년 사형이 도입된 이래 파푸아 뉴기니에서 첫 사형선고가 있었다. 2월 20일 찰스 움부수는 국가법정에서 고의적인 살인, 강간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찰스 움부수의 변호사는 대법원에 항소하였다.

이 사형선고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형을 선고할 폭력범죄에 대해 논의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하였다. 최근 사형을 폭넓게 적용하자는 요구가 있지만, 사형이 도입된 이래로 수상인 줄리어스 찬씨는 계속적으로 사형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의 모든 사법관련자들이 참석한 사법위원회에서 찬 수상은 파푸아 뉴기니 사회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절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아공화국

1995년 2월 15일에서 17일사이에 남아공화국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한 사례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헌법소원자들의 변호인들은 1994년 4월 제정된 헌법이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인들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앰네스티를 대표하여 이 공청회를 참관한 사람은 케벡대학의 교수이자 국제법상의 사형제도폐지 분야의 권위자인 윌리엄 사바스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이 사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뉴욕, 사형제도의 재도입

1995년 3월 7일 조지 파타키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사형제도를 재도입하는 의안에 서명하였다. 지난 18년간 뉴욕의 입법부는 계속적으로 사형제도 재도입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그때마다

12년간은 마리오 쿠오모주지사가 그리고 6년간은 휴 케리주지사가 승인하지 않았다. 마리오 쿠오모씨는 1994년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그의 가장 강력한 적수였던 조지 파타키씨가 당선된 주요원인은 당선 즉시 뉴욕에 사형제도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공약이었다. 파타키씨는 1995년 1월 1일에 취임하였다.

텍사스,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집행

1월 4일 제스 드 웨인 야콥씨는 1995년 들어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된 사람이다. 제스 야콥씨는 1985년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이 열린지 8개월후, 같은 사건에 연루된 그의 여동생에 대한 재판에서 야콥이 아니라 그의 여동생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 증거를 제시한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야콥이 주요목격자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배심원들은 정식으로 그의 여동생에게 10년형을 선고하였다. 미연방 대법원에 대한 일련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야콥은 사형집행되었다. 반대입장에 선 미연방 대법원의 스테판 브레이어판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직면하였다." 비공식적으로 바티칸 신문의 편집자는 이 사형집행은 너무나 믿을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미시시피주

영국인 변호사 클리버 스타포드 스미드씨는 가스실에서 사형집행될 것을 선고받은 5명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집행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미시시피주를 고발하였다. 1983년에 미시시피주는 한 사건에 대한 대중적인 반응을 근거로 사형수들에게 주사살과 가스실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사형수 5명들은 이러한 규칙이 도입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이들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즉, 이번 논점은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살펴볼 때, 이들에게 선택권 없는 사형집행이 선고된 것은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을 금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중국

1994년 하반기의 사형집행현황

94년에, 앰네스티는 중국에서 2,49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1,791명이 사형집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밝혀진 숫자는 실제 사형선고후에 집행된 숫자보다도 적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일부 사형선고와 집행은 공개되었지만, 중국 당국은 사형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기밀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94년 9월 하루 동안에 후안, 후베이지방에서 43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이 사건은 이 도시에서 발생한 83년에 있는 범죄추방기간의 사형집행이후 가장 규모가 큰 사형집행으로 기록된다.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중국전역에 걸쳐서 사형집행되고 있다. 94년에 사형된 헤난지방에 사는 두 명의 농부는 36마리의 소를 훔쳤다는 혐의로 사형되었다. 상하이에 있는 12명의 사람은 7월, 차를 훔친 혐의로 사형되었다. 이것은 단지 비폭력적인 범죄에 대해 중국에 있어 사형선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예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투기 또는경제범죄에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보고된 사례는 유 지아난의 경우이다. 그는 헤난에 있는 린시안 인민병원의 부원장이었다. 94년 10월에 그는 불임임 하기 싫어하는 여성들에게 허위 불임증서를 교부했다는 혐의로 사형집행되었다. 그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의하면 86년과 91년 사이 그는 병원에 근무하는 5명과 공모해서 불임하지 않은 여성에게 허위 불임증서 448장을 발부하고 뇌물로 미화 23,000달러를 착복했다고 한다. 이 돈의 절반이상이 유 지아난에게 들어 갔다.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5명도 법에

따라 벌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았다. 많은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공개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선고 받는 과정에서는 수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팔은 등뒤로 묶인 채 이름을 달고 있으며 목에는 자신의 죄목을 써 붙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형태의 재판은 부당한 것이며 수인들에게 잔인한 행위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협약에 나타나 있는 생명권의 측면에서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사형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간추린 소식

- 라투아니아 - 1995년 1월 1일부로 사형사례에 대한 항소를 허용하는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현재까지는 이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에 철저히 부합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 세인트 빈센트 - 1995년 2월 13일 4년만에 처음으로 3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사형집행에 대한 결정은 불과 집행 며칠전에 공고되었다.
- 터키 - 8명의 쿠르드족 국회의원들이 "분리주의"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 스페인 - 1994년 11월 3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이 안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것이다. 스페인은 이미 1978년에 평상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으나 광범위한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형을 존치하고 있었다.

94년 11월 소식지에서

투르크공화국의 사형제도

국제앰네스티의 정보에 의하면 투르크공화국의 형법은 평화시 18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시행하고 있다. 196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 형법은 국가반역죄, 간첩활동, 테러행위, 외국정부의 대표자에 대한 테러행위, 태업, 국가를 위협하는 범죄를 조직하는 것,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특별히 위험한 국가적 범죄, 강도행위, 교정교육을 위한 노동기관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 화폐위조 행위, 화폐법 위반, 국가재산에 대한 거금횡령, 가중살인, 가중강간, 뇌물수수, 경찰을 살인하는 행위, 가중공중납치, 상관을 거역하거나 공식적인 의무를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의 적용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우 빈약하다. 사형은 총살형이 사용되고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투르크공화국의 정부관계자들에게,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사형제도의 적용범위를 줄일 것과 사형제도를 재검토하는 동안에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대한 일시적 유예를 실시할 것 그리고 사형의 적용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의 통계자료를 발표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관계자들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투르크공화국에서의 모든 사형을 감형할 것을 촉구한다.

투르크공화국이 구 소련의 연방이었을 당시에는, 사형선고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진정서가 검토되기까지 약 2년이 걸렸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소속된 공화국의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 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소연방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소연방 대통령 또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91년말 소연방 정부가 해체되면서 공화국보다 높은 단계로의 상소나 진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알고 있는 투르크공화국에서 최근 있었던 사형사례는 사형의 선고에서부터 상소와 진정서 제출단계, 사형집행까지의 기간이 이제 매우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사례들은 투르크공화국이 91년에 독립을 선언한 이후 국제앰네스티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다.

바이람겔디 차리에프

바이람겔디 차리에프씨는 91년 11월 5일 발칸 켈라야트의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계획된 강도행위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92년 1월 15일 투르크공화국의 최고 법원, 형법전문위원회에서 개최된 항소 심에서 재확인되었다. 바이람겔디 차리에프씨의 변호사가 항소한 후 2월 5일 최고법원 간부회의는 재심리를 하였으나 형법전문위원회의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람겔디 차리에프씨는 판결을 받을 당시 22세였고, 발칸 켈라야트의 기지라르밭에 있는 국영 농장에서 양치기 일을 했었다. 그는 91년 7월에 기지라르밭 근교의 세키잔 부락에서 남자 두명을 사살하고 두명을 상해한 죄를 범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바이람겔디 차리에프씨는 그의 아내가 6명의 남자들에 의해 운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검찰측의 "강간이야기는 조작된 것이며 피해자들은 총기 발포가 있기 직전에 모두 취해있었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선처를 바라는 진정서는 92년 5월에 기각되었다. 투르크공화국을 10월에 방문한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은 바이람겔디 차리에프씨가 사형집행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리 아이리예프

유리 아이리예프씨는 네빗 닥에 위치한 발칸 웰라얏의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친구의 비디오 카메라를 훔치기 위하여 계획된 가중살인을 한 죄와 증거인멸을 위하여 그의 친구를 태워 사살했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고 법원은 2월 10일에 그의 사형을 재확인하였다. 유리 아이리예프씨는 28세로 아르메니아인이며 네빗 닥에서 살았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그는 아시가뱃에서 온 형사들에게 심문을 당한 후 그의 친구를 살해했다고 처음으로 자백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후 자백을 철회하였고, 원래의 진술 즉 그는 무기 및 마약 밀수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육군장교가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살해당한 친구 또한 동일한 밀수단의 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칸 지방법원에서의 재심리 이후에 유리 아이리예프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92년 9월 2일, 사전수사에서 모순적인 내용을 이유로 최고법원에 의하여 보강수사를 위해 되돌려졌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증인들의 증언은 재심리 과정에서 왜곡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육군장교측 참고인은 검찰측에 의해 무시되어졌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 이 육군장교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장교는 그가 국외에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법정에 소환되지 않았다. 이러한 매우 특이한 국면에서 유리 아이리예프씨의 유죄여부에 관한 깊은 의혹이 투르크공화국에 있는 지방의 대표적 공식 일간지인 (투르크메니스탄 이스크라지)에 93년 3월 17일자로 표명되었다. 유리 아이리예프씨를 위하여 그의 마을 사람들, 직장 동료, 그의 부모님의 직장 동료들, 그의 출신학교와 학원 사람들 모두가 서명한 진정서가 대통령에게 보내졌다. 레본 테르페트로시안 아르메니아 대통령도 니야초프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93년 12월 11일 니야초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6월에 거부당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것이 그의 사형에 대하여 탄원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길이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비록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순간에 유리 아이리예프씨의 운명을 되돌릴 수는 없으나 - 그가 곧바로 사형되어졌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성명서  
15명의 사형집행에 매우 우려하며

어제 아침 법무부는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중이던 15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 사형집행은 이른바 문민정부의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법무부는 통상적인 형집행의 일환임과 동시에 최근 강력사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의지로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모든 범법자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회기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한국지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사형의 잔인함과 비인도성을 한국정부에 지적하며, 사형폐지를 위한 논의를 전개할 것과 사형집행을 유보할 것을 이 미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은 잔인하며 비인도적이고도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이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이며,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하며,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 시키며,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되는 측면이 많은 형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형은 이미 세계 90개국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사형폐지를 위한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최근 사회범죄에 대한 국민감정을 이유로 범죄에 대한 정부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형집행을 실시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는 15명을 사형집행한 한국정부의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단순한 법감정에 근거하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는, 한국정부가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사형폐지 논의를 통해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희망한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는 지금 사형대기중인 나머지 42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이들의 사형집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들을 종신형으로 감형하여 비록 흉폭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된 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최소한의 생명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희망한다.

1994년 10월 7일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94년 12월 소식지중 사형제도  
사형제도

일본, 사형집행보고에 대한 긴급청원

12월1일 44살의 아지마 유키오씨가 94년 들어 처음으로 동경에 있는 구치소에서 사형집행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살인혐의로 기소된 그는 16년 동안 사형선고를 받은 후 대기중에 있었다. 통상적인 정책에 의해 일본정부는 그의 사형집행의 공식적으로 확인을 거부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정부에게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할 것과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서 사형집행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여 왔다. 11월25일 일본정부는 사형의 존치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정부가 이 설문조사결과를 추후의 사형집행에 대한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993년 한해 동안 1976년 이후 어느 해보다 많은 7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었다. 현재 58명의 수인들이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대기 중에 있다. 이러한 수인들 중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후 20년 이상 대기 중에 있는 4명의 수인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일본정부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기 몇시간전야 해당수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할 뿐, 수인의 가족들이나 변호사에게는 통보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사형집행된 수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며,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거부한다. 사형대기중인 수인들에 대한 수형 환경은 매우 거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인들이 독방에 수용되어 있으며, 몇몇 가족과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면회가 거부되고 있다. 아지마 유키오는 그의 양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왔다. 일본에서 사형폐지운동은 지난 수년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전직 수상, 전직 대법원 판사, 전직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사형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사형폐지운동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비록 1989년부터 1993년 사이에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그후 8명이 사형집행되었다.

■ 일본정부당국에게 다음내용의 항의편지를 보냅니다.

- ◇ 12월1일에 발생한 아지마 유키오의 사형집행에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의 집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 사형제도가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임을 강조한다.
- ◇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중인 58명의 수인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한다.
- ◇ 일본에서 사형집행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최근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 확인을 요구한다.

■ 보낼곳

Mr. Maeda Isao, Minister of Justice  
1-1-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 Japan

주한 일본대사님  
주한 일본대사관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110-150

이탈리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다

94년 10월 5일 이탈리아국회는 전시 균형법내의 사형제도조항을 삭제하는 최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지금부터 이탈리아가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국이며, 세계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54개국으로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93년 7월, 이것을 제안하는 법안이 이탈리아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총선거와 관련하여 국회가 해산되었을 때, 상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총선거가 끝난 후 30명의 상원이 이 법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9월 14일 상원의 국방위원회와 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10월 5일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10월 25일 공포되었다.

중국

최근 방영된 영국의 TV 프로그램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사형수의 장기를 신속하게 운반하기 위한 구급차가 사형집행장에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필요한 장기의 위치에 따라 사격위치가 정해진다고 한다. 예를들면 신장이 필요하면 머리에 총을 쏘고, 안구가 필요하면 몸에 총을 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93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사형수들의 장기와 생체조직들이 당사자나 친척의 동의나 통고없이 광범위하게 이식수술에 이용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앰네스티 보고서에서 언급된 한 정보에 의하면 일반인의 장기기부를 권유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장기이식은 사형집행된 수인들의 장기제공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형수의 장기가 필요한 시점에 따라 특정 사형수의 집행일이 결정되고, 사형선고와 집행을 제한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제장기기식기구의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은 전세계의 장기이식 관련인들이 중국의 의사나 병원들과의 교류를 중단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콩과 대만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중국과의 장기무역을 금지하는 법률을 입안할 것을 기대한다.

남아프리카

11명의 헌법재판소 판사에 대한 임명이 종결되었고, 95년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이다. 아서 카스칼슨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첫번째 논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남아프리카의 최대 농민조합은 사형제도에 대한 유예령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위헌이며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헌법에서는 생명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선언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한다. 92년 3월부터 사형제도에 대한 유예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프리카에는 적어도 447명의 사형대기자가 존재한다. 95년 2월 15일 또는 16일부터 헌법재판소는 일부 사형대기자와 관련한 사형의 위헌성에 대한 논쟁을 심의할 것이다.

케냐

9월 몸바사에서 열린 법관교육세미나에서 대법원 판사인 보골리 자가씨는 법률전서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과 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항을 새롭게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저명한 케냐 판사들과 치안판사 그리고 국제법률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후퇴하는 장애인고용, 대안마련을 위한 우리의 노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나듯이 3백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해야 할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인 4만2천여명 중 9천99명만이 고용되어 있다. 이는 고용촉진법 시행 실시 이전의 7천7백58명에 비해 1천3백여 명 정도만 늘어난 것이다. 왜 고용이 늘지 않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관련책임자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고용촉진법이 시행된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욕심을 내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애인고용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준비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 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내품받 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계고용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연계고용은 장애인 고용책을 기업 입장에서 풀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정책방향이 통합고용이 아니라 분리고용정책의 한 단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1. 정부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태도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경제 4단체 중심으로 제조업 관련분야에 대 한 개선안작성 및 공청회 개최시 기업활동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실제 로 '직무수행에 적합한 대상자를 구하기 어려워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현행 2% 이상에서 1%이상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민자당에 건의했다. 민자당에

서는 8월에 제2정책조정실에서 이를 받아들인 법률개정(안)을 작성하여 장애계는 큰 반 발을 나타냈다. 일단,장애계의 거센 반발로 이 건의안은 철회되었으나 기업이 장애인고 용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사태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고용실태를 보면

첫째, 3백명 이상 정부 투자기관 22개 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은 0.5%, 726명으로 역시 법정고용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정부출연기관 역시 0.98%로 크게 밀들고 있 는 실정이다.

둘째, 3백명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잘 실시되지 못하고 있 다. 고용촉진법 시행 실시 첫해인 7천7백58명에서 94년말 현재 9천99명으로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못 미치는 0.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셋째, 92년, 93년간 6백45억원의 부담금을 거두었으나 (93년 한해 거둬들인 부담금 은 4백20억원에 달함) 장애인고용사업에 활용한 것은 1백72억원에 불과하며 이중 공단 운영비 57억원, 건물임차료 35억원, 장애인직업훈련 35억원, 인정직업훈련원 훈련보조 2 억원 등으로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상비가 대부분이어서 부담금징수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 률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을 주도해야 하는 공단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 되었듯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운영상에 있어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예 산의 70% 가까이 공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공단의 주요 목적인 장애인고용은 뒷 전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 직업훈련원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올해 직업훈련 받은 1백93 명의 훈련원 중에 1백86명이 취업확정이 됨으로 94.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으 나 실제로는 취업직후 이직율이 34.5%나 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미루 어 볼 때 실질적인 취업률은 훨씬 낮다고 보인다.

### 2. 장애인 고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장애인고용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희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기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국민경 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발생 90%이상인 산업재해·교통사고·환경공해로 인한 질병 등이 원인임을 볼 때 기업과 국가의 연대책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에 있다.

둘째, 노동자 총수에서 장애인 노동자수 및 실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율과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현재 이미 취업되어 있는 장애인의 고

용율은 보장되어야 하고(하한선), 장애인 실업자 및 잠재적 장애인 등을 완전고용하는 선(상한선)내로 유지하되 일반인의 고용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 연대적 책임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전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92년도 현재 약 12만3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1.5%의 고용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현재의 취업 장애인 고용율은 보장되어야 한다. 오히려 장애인 실업자는 92년도 현재 14만 명으로, 일반인의 기업체 취업비율인 49.3%만큼 장애인 실업자도 고용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2%이상 의무고용율이 적용돼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프랑스 6%, 이집트 5%, 아르헨티나 4%, 인도 3-10%, 일본 1.6%로 대부분 우리나라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 전체 장애인 고용율이 1.5%에 달하므로 3백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93년도 3백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고용율은 0.43%에 불과, 94.6 현재 50대 기업 고용현황).

넷째, 상시 3백인 이상 고용사업주의 의무고용율은 2%이나 업종별로 장애인 사용권한 정도를 감안하여 20-30% 정도의 적용제외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5% 정도의 의무고용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상시노동자 3백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주에게는 큰 부담이 없다. 일본의 경우는 상시 63인 이상, 프랑스와 영국은 20인 이상, 서독은 16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 3. 왜 노동부는 연계고용제를 들고 나오는가

94년말 현재 장애인고용율이 0.43%로 의무고용율 2%에 훨씬 미달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기능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공장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라도 연계고용을 통한 고용율을 향상시키겠다는 사족을 달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장애인고용율이 끌치거리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마련을 준비했으나 정부 스스로 장애인고용율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민간기업은 노동부가 통제할 만큼 만만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촉진 기금은 날로 쌓여갔다.

그래서 나온 안이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지원안'인 것이다. 장애인전용공장 설립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장설립 투자비용의 50%까지 (최고 50억원 한도) 장기저리융자 (연리 3%, 5년거치 포함 10년 분할상환) 를 해주고, 복지공장을 직업재활시설형태로

운영할 경우 복지공장에 하청을 주는 원청기업에 대해서 일정액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조건이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근로시설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하청을 주거나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연계고용형태의 핵심이다. 더욱이 이러한 것을 도급제라는 형식으로 법제화시키겠다는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정책은 노동부가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편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고용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으니 조급해지고, 이를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으려는 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고, 그래서 장애인 입장은 배제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면서 나온 안인 것이다.

### 4. 제한적 상황에서의 대안

장애인실태에 관한 정확한 보고서조차 없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취업가능 장애인수, 이미 취업된 장애인 실태, 이 법에 따른 고용효과, 장애인 노동 생산력, 이로 인한 사업주의 이점, 장애인 직종 연구·개발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첫째, 약 42만명의 경제활동가능인구수중 피고용자는 12만5천명, 자영자는 16만8천명, 실업자는 14만3천명으로 실업율은 32.6%이다. 이 수치는 90년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수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정부조차 사용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통계다. 그래서 노동부도 이 통계를 근거로 정책 세우기를 꺼리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수립을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을 노동부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장애유형별·정도별·원인별·연령별·남녀별 등 직업재활 욕구사항, 고용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일정한 기간을 정기적으로 두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고용이 안되는 이유가 편견과 기능부족이 문제라면 연계고용 방법전에 통합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사업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생산 공정중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공정을 분석해서 일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포드자동차회사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종 3천여 공정을 분석해서 적절히 고용했던 경험을 우리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이념적 배경은 사회연대책임과 함께 일반고용으로 삼고 있다. 그럼으로 고용촉진법의 의미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넷째,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메리트를 주어야 한다. 세제상 우대책, 관급공사 수주시 가산점, 그리고 지금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초과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및 장려금의 대폭적인 인상, 신규 장애인고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보전등의 유인책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일반고용에 있어서도 국가책임이 강조되는 현대국가에서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장애인고용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싶다.

역사의 발전법칙이 장애인고용에서도 나타나길 바란다.

### <별첨> 장애인고용촉진법 내용 정리

총칙에 나타난 이 법의 목적으로는 장애인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과 일반국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사업주는 장애를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며, 장애인 노동자도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해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본계획 및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상근 전문위원을 두며 이중 1/3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촉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앞서 정부는 취업전의 장애인에 대해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취업후에도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신체적, 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채용배치, 작업보조구, 작업설비와 환경 등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

고용촉진공단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직업소개, 적응훈련, 직업훈련원 및 표준작업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며 이는 공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채용 인원의 2/10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기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2.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무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100 이상 5/1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장애인이 일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정부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실시상황의 제출을 명령하고, 그 계획이 부당할 때에는 계획의 변경을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계획의 수립과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공포할 수 있다.

4. 정부는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초과 고용된 장애인의 수에 비례해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장려금의 경우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5. 기준 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기준고용율에 의한 장애인 총수에서 매달 첫날 현재 일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이 연간 합계액이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달 소요되는 특별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며 그해 최저임금액의 60/10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당해년도 부담금을 다음년도 첫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6. 보칙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수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반

드시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7. 위 법에 따른 시행령이 1990년 12월에 공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1)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연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고용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임원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실시상황 관련서류의 제출 및 적용제외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3백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하며

(5) 사업주의 기준고용율을 1,000분의 20으로 정하되, 1991년에는 1,000분의10, 1992년에는 1,000분의 16의 비율로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함.

(6) 장애인고용지원금, 장려금의 청구 및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용도, 운용·관리, 수납, 지출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되, 직업생활상담원의 자격구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동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둬.

## 성폭력, 아내구타의 실태와 대책

김혜선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인권국장

성폭력과 아내구타는 남성의 對여성 폭력으로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性과 권력을 이용한 여성통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 볼 때 성폭력특별법에 아내구타 부분이 누락됨으로써 성폭력과 아내구타가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는 감이 있으나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강간 등과 같은 성적인(sexual) 측면에 제한시키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같은 인식의 기반하에 여기에서는 성폭력과 아내구타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 성폭력 >

#### 1.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도강간/ 인신매매, 강요된 매매춘/ 공연음란/ 성기노출/ 아내구타(강간)/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성적희롱/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행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성폭력은 정조에 관한 죄라는 개념을 불식시키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성폭력으로 데이트강간, 여관유인강간, 직장내 성폭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동의간음죄) 를 신설하지 않았다. 또한 아내구타 (강간), 성적희롱 등을 성폭력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2. 성폭력의 실태

### 1) 성폭력의 발생빈도

성폭력의 발생빈도는 정확한 통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검찰집계에 의한 공식통계로 보면 80년에 연간 5천6백14건이던 강간범죄가 89년에는 6천4백75건, 90년에는 9천3백22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범죄라는 성폭력의 특성으로 볼 때 숨은 성폭력의 피해정도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88년의 강간건수가 4천6백58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0.9건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으나 90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2천2백64명 중 강간 피해자는 2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피해자수는 485.9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공식통계보다 강간이 44.6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신고율이 97.8%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간 외의 다른 성폭력 유형 발생빈도를 보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참조).

여성들이 생애동안 경험한 성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가벼운 추행이 1번 있었던 경우는 18.6%, 2번 이상은 57.8%(76.4%)로 가장 많고 성기노출은 22.6%, 51.9%(74.5%)/ 성적희롱은 11.2%, 37.4%(48.6%)/ 음란전화는 15.8%, 30.5%(46.3%)

/ 심한추행은 13.9%, 9.8%(23.7%)/ 강간미수는 9.75, 4.4%(14.1%)/ 강간은 4.7%, 1.4%(6.5%)로 나타나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직장여성중 15.4%(한국여성단체협의회, 91년)가 성폭행을, 87%(한국여성민우회, 93년)가 성적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2) 성폭력 피해의 특성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낯선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동네사람, 직장상사, 동료 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는 심한 추행의 경우는 한적한 길거리나 골목이나 야외에서, 강간은 숙박업소나 가해자의 집에서 주로 발생한다.

\*성폭력은 성고정관념 때문이거나 혹은 아는 사람이므로 혹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

\*가해자는 물리적인 강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강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

### 3)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타박상, 골절, <sup>낙태</sup>천녀막 파열, 임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성폭력을 다닌 여성들은 내향적 자책과 수치심을 느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자살의 충동을 느끼기도 하며, 남성에 대해서나 성행위,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남성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쌓기도 해 가해남성의 살인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성폭력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훼손됨은 물론 일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장애를 받기도 한다.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초기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피해와 불안을 물어버리려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정신적 후유증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이같은 성폭력은 여성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피해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 3. 성폭력의 대책

### 1) 사회구조 및 문화적 대책

#### (1) 남녀 불평등 구조의 개혁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이며 기본적으로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무권력의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게 되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소외를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다방면에 진출하여 여성의 사회적 힘을 배양하는 것은 남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2) 건전한 성문화 확립

##### A. 성차별, 성이중윤리, 남녀 성관계 모델 등의 변화

우리의 성문화는 성기중심성, 사물화, 남녀 이중성규범, 남성성욕의 무제한 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같은 성문화에서는 강간이나 매춘 등이 확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남녀 평등한 성규범을 확립하고, 남녀 성관계가 동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며, 전인적인 감수성의 교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자료나 성교육과정이 정책차원에서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기관이 필요하다.

## B. 사회적 규제와 운동-성적 자극물 근절, 향락산업규제, 성폭력추방 국민운동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거나 대상화하는 쪽으로 성문화를 변질시키고 노동의 가치를 비하시키며 사회의 생산성을 잠식하고, 국민의 건강한 정서를 해치는 향락산업을 규제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정부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퇴폐적이고 변태적이며 폭력적인 성행위를 부추기는 영화, 비디오, 출판물의 범람을 규제해야 한다. 이와같은 측면에는 정부의 정책에 더불어 범국민적인 성폭력 추방에 대한 합의가 뒤따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 발생당시 즉각적인 신고나 대응 등의 범국민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 2) 법적 규제 -성폭력특별법의 보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는 여성계의 입장이 전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기존의 형법에서 배제되었던 성폭력 범죄 유형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관한 준강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들을 신설하여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범죄유형들이 처벌 가능해 졌다. 또한 상담소나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경비의 보조 및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형벌제도의외에 보호감호나 보호관찰을 도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심리의 비공개 및 의료보호등이 새로 신설되어 있기는 하다. 아래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법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념정의에 있어 아직도 성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정조에 관한 죄로 두고 있어 보호받을 정조와 보호받지 못할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b. 친족에 의한 강간, 신체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만을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성폭력과 함께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그외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 친고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범죄로 인식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c. 여성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많은 강제적 성폭력(특히 데이트강간, 직장내 성폭력 등)이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성적희롱과 아내구타(강간)이 누락되어 있다.

d.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이 고소취하 강요 등 부당한 압력이나 수치심, 공포심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 보호등이 누락되어 있다.

e. 성폭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집중시킬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지 않음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행정 및 사법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 &lt; 아내구타 &gt;

## 1. 아내구타의 개념 및 범위

일반적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나타내는 말로는 다소간의 의미상의 차이는 있으나 아내구타, 아내폭력, 아내학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 아내구타라는 용어는 아내를 심하게 두들겨 패는 폭력을 연상하게 하지만 남편의 폭력에 대해 가장 널리 회자되고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아내구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서 아내구타는 신체적 폭력에만 초점을 두되 신체적 폭력에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뒤따름을 덧붙이고자 한다.

아내구타의 범위는 따귀, 밀치기 등의 경미한 폭력으로부터 마구 두들겨 패기, 목조르기, 흉기로 위협 혹은 사용, 성적 폭력 등의 각종 심각한 폭력을 망라한다.

## 2. 아내구타의 실태

## 1) 아내구타의 발생정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아내구타의 발생빈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제까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2)에서는 45.8%, 보사부 조사(1993)에서는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1년 한해동안에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미한 폭력은 17.8%, 심한 폭력은 10.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전화의 상담 건수 중에서도 구타에 대한 상담이 31%(94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타후의 강제적 성관계도 20-25% 정도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형사정책연구원, 22.9%; 한국여성개발원, 28.8%)

## 2) 폭력의 지속성

한 번 발생한 아내구타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의 가장 주된 이유는 구타발생 초기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간의 폭력부인이나 이웃, 친지, 경찰 등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남편의 행동을 제어할 방법을 제안하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받지 않는 남편은 다음 번에는 더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폭력이 반복되면 가족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 폭력이 장기간 지속되

게 된다. 피해자인 여성 쪽에서는 구타관계를 탈피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나 폭력가정에 남겨질 자녀의 문제, 경제적 자립의 문제,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비난 등과 장기적인 구타로 인한 여성자신의 무기력으로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

### 3)피해의 심각성

장기적인 아내구타는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비인간화, 여성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며 타가죽구성원 특히 자녀에게 폭력적 사회화로 폭력의 세대전이가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남편의 폭력이 장기화되면서 폭력의 성격이 보다 포악해지며 교묘해 짐에 따라 범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서적, 물리적인 가족파괴라는 결과를 낳으며, 극단적으로는 구타남편(아버지)을 살해하는 사회적 폭력을 발생시킨다.

## 3. 아내구타의 대책

### 1) 사회적 통제장치의 마련

#### (1) 법적 대책

현행 법규정으로는 형법 25장에서 상해와 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여기에는 비속, 배우자에 관한 폭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남편을 고소하기 어렵고, 경찰 또한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여기고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전과기록을 요구하고 있어 구타남편에 대한 법적제재가 어렵다.

민법 친족법 840조 3항에서는 구타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어 피해여성을 돕는 유일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이혼 자체가 어려우며, 재판이혼도 구타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나 법원이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여성이 남편의 곁을 떠날 때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 및 학교명에 대한 비밀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편의 보복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하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 교정, 격리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2)사회복지적 대책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피난처)'와 같은 시설이 많이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 및 알선과 생계비 보조, 피해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 등이 요청된다. 또한 쉼터에 있는 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쉼터에

있던 구타여성의 많은 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타남편을 상담, 치료하고 자녀들을 보호,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한국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민법, 형법, 사회복지 차원을 망라한 '가정폭력방지법(가칭)'을 입법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다.

### 2)사회구조 및 문화적 대책

아내구타는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구조, 불평등한 남녀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경주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여성의 정치적 힘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남편의 폭력에 대한 여성 자신의 인식전환은 물론 아내구타가 개인 혹은 가정이라는 사회적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며,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